



책을 내면서

일본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여전히 자기 영토라고 강변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측 논리는 이렇다. “일본은 예로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늦어도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했으며, 1905년 근대법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했고, 패전 후 1952년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영토 조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영토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논리는 핵심적인 자료를 숨기면서 자국민과 세계인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 일본은 17세기말에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했고 1870년과 1877년 두 번에 걸쳐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 조선영토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에 그런 역사적 공문서를 숨기며 독도를 무병이자 무주지로 주장하며 선점논리를 적용해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시켰다. 선점논리 자체가 고유영토설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그들은 후에 ‘무주지 선점’을 ‘고유영토 재확인’으로 말을 바꾸었으나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재확인’하기 이전에 일본 스스로가 ‘확인’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확실히 제외되었으며, 미국무성과는 달리 영연방의 입장은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연방의 타협에 의해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진 것이지만 일본영토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결국 일본은 자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공문서 등을 숨기면서까지 과거의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독도영유권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책자는 일본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고 모순에 가득 찬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 책자를 통해 모든 세계인들이 독도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8. 7.

I. 독도영유권의 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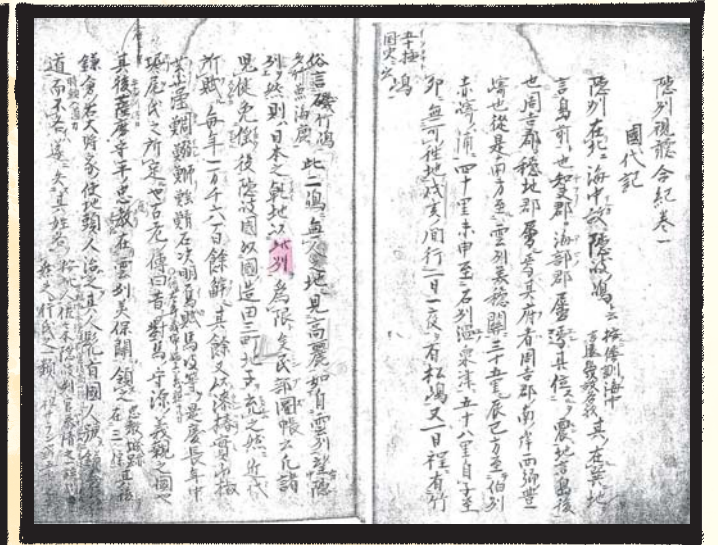
1. 일본고문헌과 일본고지도가 증명하는 한국의 독도영유권

일본에서 17세기~19세기 중반까지 독도는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렸고 울릉도는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렸다.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은주시청합기(隱州視廳合紀)』(1667)이다. 이 문헌은 이즈모국(出雲國: 현 시마네현의 일부)의 관리인 사이토 호센(齊藤豊仙)이 오키국(隱岐國)의 군수를 대신해 견문한 내용을 적은 책이다. 이 문헌 속에서 사이토는 울릉도를 무역선이 가는 땅과 같은 섬, 즉 이국(異國)의 땅으로 인식하고 ‘무라카와(村川: 울릉도를 왕대한 상인)씨가, 관에서 주인(朱印)을 받아 큰 배를 이소타케시마(=다케시마, 울릉도)에 보낸다’ 라고 적었다.

『은주시청합기』는 일본의 건지(=북서쪽 땅), 이 주를 한계로 한다’라고 써서 오키국을 일본의 북서쪽 한계로 정했다. 그리고 에도막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일본지도를 작성했다. 그 중 네 번째까지는 각 지방의 지도를 작성해 하여 그것을 집대성해 일본의 전체 지도를 만들었고 마지막은 이노 다다타카에 명령해 실측 일본지도를 작성케 했다. 그러나 에도막부가 만든 5장의 관찬지도는 모두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켰다.



● 幕府撰慶長日本地圖(막부찬 게이초 일본지도: 서일본 부분)(1640)
에도막부가 작성한 관찬지도, 일본의 북서쪽 한계는 오키섬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4장의 관찬지도도 마찬가지다. 일본정부 에도막부는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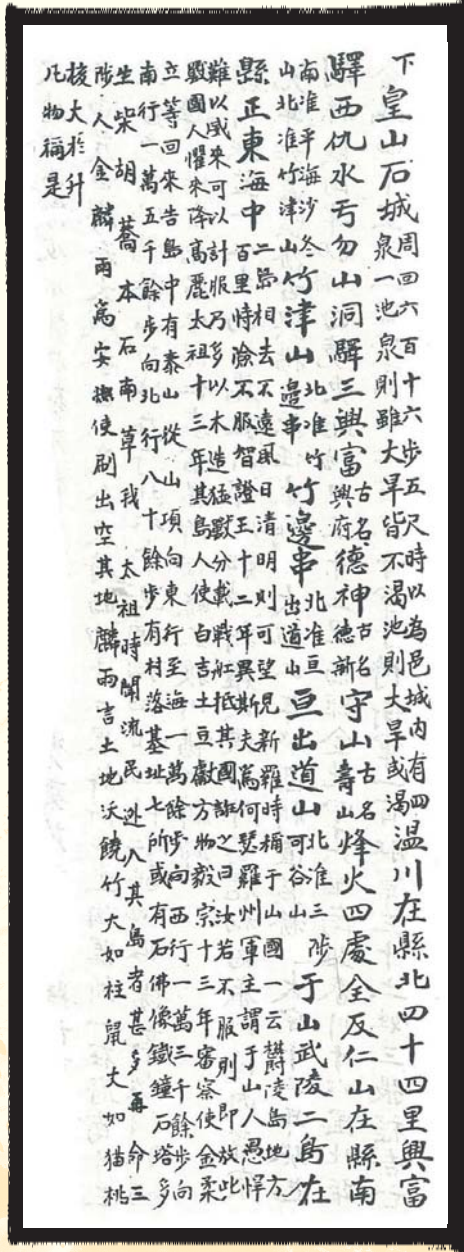
● 은주시청합기 국대기
자료 설명: <술해 사>(서북방향)에 두 낫 한 밤을 가린 마쓰시마(松島: 독도)가 있다. 또 한 낫거리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가 있다.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고려(高麗: 조선)를 보니 마치 운주(雲州) 이즈모, 현 시마네현의 일부)에서 은주(隱州: 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 경계는 이 주(州: 은주=오키섬)로써 끝을 삼는다.)



2. 한국고문헌과 한국고지도가 증명하는 한국의 독도영유권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기록된 가장 오래된 문헌은 삼국사기이다. 이에 따르면 512년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토벌하여 복속시켰다고 기록되었다. 그 당시 우산국이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나라이다. 조선 왕조의 관찬 사서인 『동국문헌비고』(1770)에는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마쓰시마(松島)다’ 라고 기록되었다. 그 이후 조선왕조의 관찬서와 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땅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쓰시마란 당시의 독도의 일본명이다.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우산, 무릉 두 섬은 현의 동쪽 해중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 우산국이라고 칭했다.’ 라고 기록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우산도와 무릉도(울릉도)는 현재의 독도와 울릉도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두 섬을 우산국이라 말하고 있다. 기타 조선왕조는 『속중실록』(1728), 『강계고』(1756),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7)등, 관찬서에 ‘울릉·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마쓰시마 라고 기록했다.

조선 정부는 첩사 장한상 일행을 울릉도조사에 파견했다. 일행은 울릉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도의 존재를 확인하여 보고서 『울릉도사적』 (1694)에 기록하였다. 조선의 지도에 우산도(독도)는 조선땅으로 나온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의 부도 ‘팔도총도’에는 동해에 울릉도·우산도(독도) 두 섬이 그려져 있으나 위치가 뒤바뀌었다. 그러나 시대가 내려가면 우산도의 위치는 울릉도의 동쪽으로 정확히 나오게 된다. 대표적인 지도로서는 <해좌전도(海左全圖)>가 있다. 이 지도는 우산도에 봉오리 두 개를 그렸고 우산도가 독도임을 정확히 표현했다.



● 세종실록지리지(1454)
세종실록지리지(1454) 권 153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조
자료설명: (우산, 무릉 두 섬은 현의 동쪽 해중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 우산국이라고 칭했다) : 우산도와 무릉도(울릉도)를 우산국이라 하여 날씨가 맑을 때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술. 즉 우산도는 틀림없이 독도이다.



● 해좌전도
자료설명: 우산도가 정확한 위치에 있고 독도의 동도, 서도에 있는 산봉우리가 두 개 뚜렷이 그려졌다. 산이 없는 현재의 죽도울릉도 동쪽 2km거리에 있는 섬과 확실히 구별된다.

3.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수립했다는 일본정부 주장의 허구성

17세기 초 일본의 호키국(伯耆國: 현 돗토리 현의 일부)의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이 에도(江戶)막부(무사정권: 1603-1867)의 허가를 얻어 1620년경부터 울릉도, 독도에 도해(渡海)하기 시작했다. 이후 1693년에 안용복 사건이 일어나 결국 1696년에 에도막부는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본은 1696년 이후에도 독도에 대한 도해는 금지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17세기 중반에 확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무시한 허위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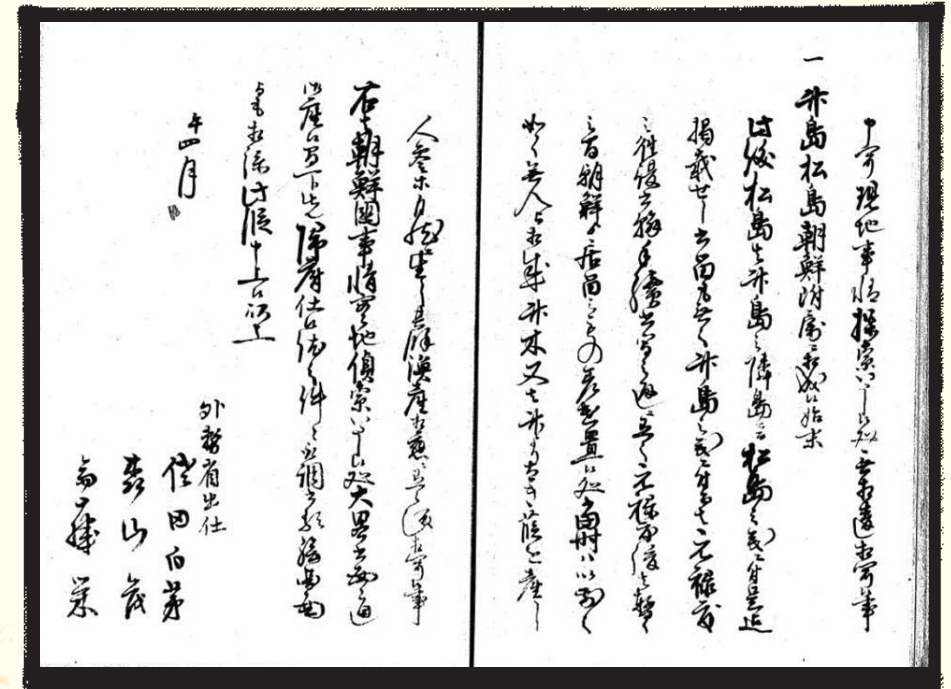
1696년 1월 25일, 에도막부의 질문에 답하면서 돗토리번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일본의 어떤 주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마쓰시마(=독도)는 다케시마(=울릉도)에 가는 도중에 있는 섬’이라고 보고했다. 이로부터 3일후 에도막부는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봉건사회였던 당시, 각 지방의 영지가 아닌 땅은 외국의 땅이었다. 울릉도 도해금지령으로 울릉도에 가는 도중에 있는 섬인 독도에 대해서도 도해가 금지되었던 것이다. 즉 이 시점에서 독도는 확실히 조선영토가 되었다. 그것은 그 후 돗토리번이 자신의 영지를 그린 지도에 한번도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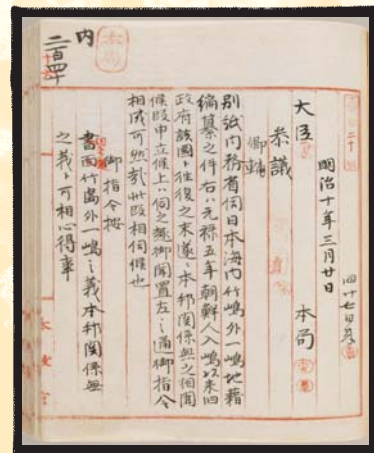
● 마쓰시마(松島=독도)가 자기 영지가 아니라고 한 돛토리번의 보고서

4. 일본메이지정부의 최고권력기관이 독도·울릉도를 한국영토로 두차례 확인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접어들어 일본정부의 3권을 장악하고 있던 최고권력기관 태정관은 에도시대에 에도막부가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한 결정을 두 번에 걸쳐 재확인한다. 첫 번째는 1870년, 태정관은 외무성에게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전말'에 대해 조사를 명령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정관이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부속'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점이다. 두번째 1877년 시마네현과 내무성이 울릉도와 독도가 '에도시대에 일본과 관계가 없는 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점을 다시 여쭙겠다'고 태정관에게 물었던 것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에 태정관은 '다케시마(울릉도) 외일도의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렸고 내무성은 그것을 외무성과 시마네현에 알렸다. 외일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일본학자들이 주장하지만 이 지령문의 별지에서 외일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다음에 일도가 있다. 마쓰시마라고 부른다. 주위는 약 30정(약 3.3km), (오키 섬에서 배로 갈 때) 다케시마와 동일 항로에 있고 오키 섬에서 80리 정도(해리로 약 148km, 일본은 옛날부터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나름대로 해리개념을 갖고 있었다. 실제 거리는 157km)의 거리다. 나무나 대나무는 드물고 물고기와 짐승을 잡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마쓰시마는 그 주위나 오키 섬에서의 거리, 기타 특징으로 확실하게 현재의 독도인 것이다. 즉 일본정부는 울릉도·독도를 일본영토 외, 조선영토로 재확인해 주었다.



● 1870년 메이지 정부의 최고권력기관인 태정관이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전말에 대해 외무성에게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 1877년 태정관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일본영토 외로 한 지령을 내렸다. 일본 내무성의 조희: 다케시마(울릉도) 외일도(外一島는 1692년 조선인이 압도한 이래 구 정부(에도막부)와 해당국(조선)의 왕래가 끝나 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들었고 들었으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여쭙겠다
태정관 지령: 다케시마 외일도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명심할 것



● 외일도에 대한 설명 다음에 일도가 있다. 마쓰시마라고 부른다. 주위는 약 30정(약 3.3km), 다케시마와 동일 항로에 있고 오키 섬에서 80리(해리로 약 148km) 정도의 거리다. 나무나 대나무는 드물고 물고기와 짐승을 잡을 수 있다.
• 「次一島アリ松島ト呼フ周三十町許竹島ト同一線路ニ在リ岐ヲ距ル八拾里許竹橋ナリ亦魚ヲ産ス」



II. 한국의 독도 영유선언 및 1905년 일본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의 부당성

1.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영토로 세계에 공표

1900년 대한제국은 '대한제국관보 1716호'를 발행하여 '칙령 제41호'를 세계에 공표했다. 칙령 41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 이었고 그 제2조에서 '군청의 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해 구역은 울릉도 섬 전체와 죽도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이라고 정했다.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에서 동쪽 2km거리에 있는 섬을 가리키고 석도가 바로 독도인 것이다. 독도는 조선역사 속에서 주로 우산도로 불리었으나 1882년에 조선왕 고종과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의 대화 속에서 고종이 '울릉도와 죽도, 송도(松島=독도)를 합해서 총칭 울릉도라고 한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명칭이 변화가 생겼다. 그 후 송도는 일본명칭이므로 이것을 버렸다고 추정되고, 울릉도 주민이 독도를 돌섬으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 등의 방언으로 돌섬→독섬→독도로 명칭이 변화하여 현재의 독도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문헌으로는 1904년 일본 군함 니이다카(新高)가 '한인 이것을 독도로 쓴다'고 기록한 것이 처음이다. 한국 측 문헌에서는 1906년이 울릉도 군수 심홍택이 상부에 대한 보고서 속에 독도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것은 독도라는 명칭이 그 이전부터 정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석도란 돌섬을 한자 표기한 명칭이다.

일본 학자들은 석도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북쪽에 있는 관음도라고 하지만 관음도는 도항, 깎새섬 등의 명칭을 갖고 있었으므로 일부러 석도라고 명명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관음기(觀音嶺)라고도 불려 섬이 아닌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도항(島項)이라는 명칭도 섬의 목덜미라는 뜻이므로 완전한 섬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즉 석도란 독도이며 1900년 대한제국은 독도를 울도군에 관할구역에 정식으로 편입한 것이다. 1905년의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시마네현 편입보다 5년이나 이른 시점이었다.



●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2. 1905년 일본의 독도강제 편입, 선점논리와 고유영토설의 모순

1905년 1월28일, 일본정부는 독도를 무명, 무국적(무주지)의 무인도로 규정, 울릉도의 이름이었던 다케시마를 독도의 이름으로 하여 시마네현에 강제적으로 편입시켰다. 독도는 마쓰시마라는 역사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고 외무성은 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885년에 태정관이 폐지된 것과 당시의 도명(島名) 혼란을 이용해 독도를 무명의 무주지로 둔갑시켜 선점논리를 적용시킨 것이다.

이는 역사상 세 번이나 독도영유를 스스로 부정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덮어버린 침략행위였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자행되었다. 1899년에 조일양국사이에 체결된 '조일양국통어(通漁)규칙'은 그 규칙을 어겨도 조선에 재판권이 없는 불법등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부들은 독도가 조선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독도에서의 어업사실을 조선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동해에서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1905년에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해 선점논리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무주지에 적용되는 선점논리는 현재 일본정부가 내세우는 고유영토설과 이율배반이므로 서로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였고 1905년에 그것을 근대법적으로 '재확인했다'고 말을 바꾸었으나 1905년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확인'한 적은 전혀 없다. 결국 일본의 고유영토설과 1905년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은 양립할 수 없는



파탄된 논리인 것이다. 결국, 일본이 고유영토설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조선의 고유영토였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의 각의 결정문서(1905.1)
 자료 설명: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28일에 내각 각료 회의에서 국제법상 선점논리를 적용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해 시마네현에 편입한다고 결정. 이것은 독도가 조선영토였다는 사실을 숨기며 자행된 침략행위였다



Ⅲ. 전후 연합국의 조치로 본 한국의 독도영유권

1. 1946년 연합국사령부는 독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 접근을 금지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총사령부는 SCAPIN 제677호를 발령하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정치상 혹은 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정지했고,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연합군 총사령부는 SCAPIN 제1033호로 일본어선의 조업구역을 규정한 백야더 라인을 설치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측 접근을 금지시켰다. 일본은 이 두 문서가 독도에 대한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1948년 8월에 독립한 대한민국은 이후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도는 1948년 8월 시점에서 확실한 대한민국 영토가 된 셈이다. 즉 대한민국은 1952년 4월에 발효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1948년 8월에 독립한 것이고, 이는 일본이나 미국이 인정한 역사적, 법적 사실이다. 또한, 원래부터 그 이전의 국제 조약에서도 한국의 고유영토 임이 확인된다. 독도는 1943년 카이로 선언의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구축(驅逐)되어야 한다'라는 문구 속에 있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한' 지역에 해당한다. 패전한 시점에서 독도를 일본의 불법 점거에서 되찾았다고 보아야 한다.

2. 미국무성과 영연방의 입장에서 본 독도의 위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기재되었으나 일본의 집요한 로비로 한 때 미국무성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초안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재하기도 했다. 그 과정은 동 조약의 비조인국인 한국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영연방 등이 반대하여 독도는 일본영토에서도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독도가 일본영토로 남게 되었다는 일본측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독자적 초안을 작성했고 독도를 확실히 한국영토로 그린 부도를 초안에 첨부했다. 결국 미국무성의 초안과 영연방의 초안이 절충되어서 최종 초안에는 한반도와 대표적인 섬들만이 한국영토로 기재된 것이다.

1951년 7월 시점에서 독도가 한국영토 조항에 확실하게 기재되지 않을 것을 알게 된 한국정부는 6.25 동안 중이라는 혼란상황 속에서 이에 충분한 대응을 취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 하에서 한국정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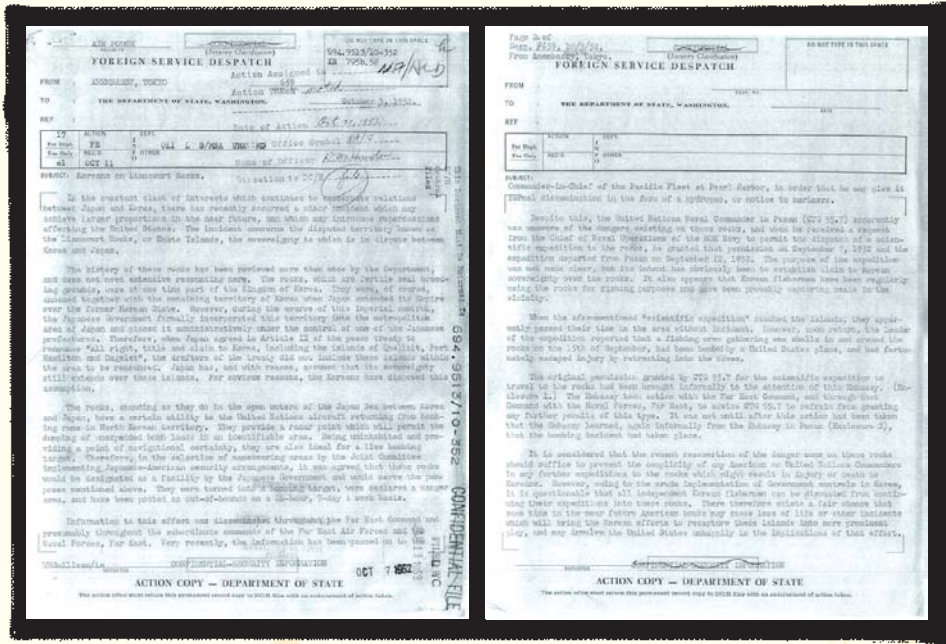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실하게 기재해 달라고 미국무성에 요구했으나 미국무성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미국무성 지리반은 독도의 귀속에 대해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미국은 독도에 대한 정보를 항상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라는 말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당시 델레스 미국무장관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1905)하기 전,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한국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토적 권리 포기를 규정하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조문에 독도를 포함시키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결국 독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냉전시작을 이유로 미국 등 연합국은 자유진영에 일본을 참가시키는 것을 우선시하여 1951년 9월에 동 조약의 조인식을 실시했다.

그 후 독도가 1905년 이전에 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충분히 증명된 상태이다. 최근에



● SCAPIN 677호의 부속지도
 자료설명: 1946년에 발령된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 677호에 따라 그려진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되었고 한국령으로 표시되어있다. 1948년에 독립한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를 행사하기 시작해 2차대전 이후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정시켰다.



● 문서〈리앙쿠르 록스〉 미국무성 안으로 보낸 일본의 미국 대사관의 공문서(1952년 10월 3일)

발견된 52년 10월의 주일 미대사관이 미국무성에 보낸 문서 속에 '미국무성은 리앙쿠르 록스(=독도)의 역사를 이미 몇 차례나 검토한 적이 있다. ... 그 바위는 바다표범의 번식지이며, 어느 시기 조선 왕조의 일부였다. 그 바위는 일본이 그 제국을 조선에 확장했을 때, 조선의 나머지 영토와 함께 병합되었다. ...일본은 리앙쿠르 록스(=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은 이유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거기 에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근거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하여 미국무성이 독도에 대한 사후조사를 하였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할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IV.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이후의 한국의 독도영유권

1. 일본의 유도로 미군 폭격연습장으로 결정된 독도

일본은 1952년 독도가 미군과의 협의 하에 미군의 폭격훈련장이 되었으므로 일본영토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1952년 당시 북한군과 싸우고 있던 유엔군의 결정에 의해 한국 측 방공식별구역(KADIZ)내에 들어 있었으며, 미공군은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폭격훈련구역에서 즉각 해제했다. 그 사실을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통보해 오기도 했다. 현재도 독도는 한국의 KADIZ 내에 있으며 그 사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1948년 독도에서 조업 중이었던 한국 주민들이 미군의 연습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고, 1952년 당시 미군에 의한 거듭된 독도 폭격이 일본의 유도에 의한 것임을 일본 의회에 서의 발언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마네현 선출 야마모토(山本) 국회의원은 1952년 5월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시하라(石原) 외무차관과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독도의 폭격연습장 지정에 대해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미군은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제공한 독도를 그대로 폭격연습장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당시 독도에는 한국인들이 출입한다는 것을 알면서 독도를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제공한 일본의 비인도적인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 미국의 독도폭격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기사(1948.6.18), 당시 동아일본은 동경발 LP통신을 인용하여 독도에서 벌어진 어선폭격사건이 미군의 고공폭격 연습시의 폭탄투하라는 사실을 확인함



2.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해양주권선언

1952년 1월에 이승만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해양주권선언'과 평화선(=이승만 라인)은 한일 양국의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에 한국에 의해 선포된 것이므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을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혹시 불법이라면 1965년의 한일국교 정상화까지 왜 존속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본은 항의를 하기는 했으나 1965년까지 해양주권선언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당시 유엔 가맹국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조인국도 아니었다. 그러나 1948년 8월에 유엔이 독립을 승인한 주권국가로서 해양주권선언을 선포하고 평화선을 설정한 것이다. 평화선은 그것이 선포된 1952년 1월 시점에서 아직 효력이 있던 백아더 라인을 계승한 것이고 공해내의 외국선박의 단순 항해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국의 '해양주권선언'은 평화선 내 해역에 대해 한국의 주권을 선언하고 자연자원의 보호와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당시 중남미의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선언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제적 선례가 있으므로 불법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독립한 후 계속 갖고 있던 독도영유권을 백아더 라인을 법적으로 계승한 평화선을 통해 유지해 나간 것이다. 일본이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망언에 불과하다.



● 이승만 대통령

3. 1965년 한일협정과 독도

1965년 6월에 한일기본조약을 비롯해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체결과정에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자고 집요하게 한국대표들에게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의 외무성 이 세키(伊関) 국장이 한일회담(62.9) 도중, "독도는 이익이 없는 섬이므로 폭발시켜서 없애면 된다"고 발언하기도 하여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1962년 11월에 한국 측이 집요한 일본 측의 독도문제 제기 에 대해 "제3국 중재안"을 제시한 적도 있었으나 그것은 당시의 한국정부의 확립된 입장이 아니었다. 때문에 한국정부는 나중에 그 제안을 철회하였고, 일본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후 한국정부는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를 계속 거부했다. 결국 독도영유권에 관한 내용은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협정 문서 속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일본이 독도문제는 사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한국 측과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즉 한일협정으로 사실상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확정된 것이다.



● 한일협정 사진 촬영
한일협정에 조인하는 박정희 대통령(1965. 6. 22)



V.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독도영유권

1.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세계석학들의 견해

미국 하와이 대학교 법과대학 존 반 다이크(Jon M. VAN DYKE) 교수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와 관련한 역사적인 증거의 측면에서 일본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평가하며, 이는 18-19세기 일본의 역사적 자료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그는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에의 편입은, 그 이전인, 1904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국주의적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는 당시 독도가 무주지(無主地)가 아니라 한국 고유의 영토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적 지배의 시작으로 인해 한국이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독도에서 울릉도 간의 거리가 독도에서 일본의 오키섬보다 가깝다는 사실과, 지난 반세기 동안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 사실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정에 유리한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미국 의회도서관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Larry A. NIKSCH) 박사는 독도 문제는 역사적 근원을 포함한 영토 문제이며, 독도를 둘러싼 주변 수역의 해양 자원의 통제와 국가적 정체성 및 자존심이 걸려 있는 사안임을 지적한다. 그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 일본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일본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대학 법과대학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 교수는 독도 문제의 해법에 대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성찰 → 독도의 한국령 인정 → 울릉도-오키 중간선 획정 → 12해리 어업금지수역설정 및 세계 과학자에게 개방 → 한일 독도조약의 체결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일본의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한 대응과 독도

독도 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 독도 이외에 현재 일본이 영토 분쟁의 당사국으로 있는 쿠릴섬과 센카쿠섬 분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은 현재 세 개의 도서 가운데, 오직 센카쿠섬만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쿠릴섬의 경우에는 독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국인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센카쿠섬의 경우에는 자국의 실효적 점유에 대하여 국제법 및 역사적인 타당성을 강조하는 반면, 쿠릴섬과 독도의 경우에는 분쟁 상대국의 현 점유가 국제법 및 역사적으로 불법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상대국에게 제의한 적이 있는 것은 독도문제뿐이다. 북방4도는 러시아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주장한 적이 없다. 현재까지 오로지 외교적인 노력으로만 북방4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은 1956년에 국교회복을 했지만 아직까지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은 러시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독도에 대해서는 어떤가? 사실 일본은 1965년에 한일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정식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을 한국에 제의해온 적이 없다. 실질적으로 한일기본조약은 양국간의 평화조약이므로 체결 후에 영토문제가 남아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외무성 사이트를 통해 1962년에 한국에 대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측이 거부해 현재에 이르렀다고 기재했다. 일본은 정식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는 않고 있으면서 그 방식을 버리지 않았다고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러시아와 한국에 대한 자세를 비교해 보면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주장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현재도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이중적 태도는 미국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북방4도는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일본에 있어 영토문제란 진실게임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용한 힘의 논리에 기대고 있는 매우 불순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계속 암시하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일본의 속마음은 독도문제를 외교카드로 사용해 먼저 독도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얻어내는 데 있다고 보인다.



한편 센카쿠열도에 대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일본은 혹시 상대국인 중국이나 대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움직임을 보여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이다.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와 모순이 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일본의 입장과 주장은 모두 옳고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일본의 이런 논리는 영토문제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 위안부 문제 등 그들이 저지른 범죄적 행동에 대해 내세우는 너무나 이기적인 주장일 뿐이다.



● 센카쿠 열도와 쿠릴 열도

3. 일본의 식민주의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 그리고 국제법적 이해

지난 2006년 4월 일본의 독도인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수로탐사 계획을 둘러싸고 전개된 한일간의 논란 과정에서 발표된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에서 개념 정의된 바와 같이, 독도는 단순히 한국 영토에 부속되어 있는 수천 개의 도서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한국의 영토이며,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으로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다.

한국과 일본간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즉, 영토분쟁의 당사국 가운데 한 국가가 상대 분쟁 당사국의 식민지였던 역사적 경험을 가진 상황, 다시 말해 식민지화 됐던 국가(colonised country)와 식민지화 했던 국가(colonising country)간에 있었던 영토 분쟁을 결정한 국제사법기관의 판결이나 중재 결정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일본의 또 다른 영토 분쟁들인 쿠릴섬과 센카쿠섬의 경우와도 다르며,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영토 분쟁 관련 사건들과도 차이를 달리 한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영토문제, 즉 법적인 문제로 제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독도문제가 역사문제로서 취급되면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고 일본은 세번이나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님을 공문서에 남겼다는 내용들이 폭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도문제를 역사문제화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입장은 독도문제는 영토문제 뿐만 아니라 역사문제인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였으며 역대왕조는 그 사실을 거듭 확인해 왔지만, 1905년에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침탈당한 최초의 희생자인 것이다.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1905년 이래 현재까지 국제법을 교묘히 이용한 독도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하루빨리 버려야 할 것이다.



● 일제시대 주민의 재판광경

Geonames Search Results

Total Number of Names in query : 17
Records 1 through 17

Source: 

Name	Country	ADM1	Latitude / Longitude	Feature Type				
Liancourt Rocks (BGN Standard) Hornet Islands (Variant) Tok-to (Variant) Take-shima (Variant) Take Sima (Variant) Tök-do (Variant) Dogdo Island (Variant) Dog-Do (Variant)	South Korea	South Korea (general)	37° 15' 00" N 131° 52' 00" E	islands				
Liancourt Rocks (BGN Standard) Take Sima (Variant) Take-shima (Variant) Tok-to (Variant) Tök-do (Variant) Chuk-to (Variant) Hornet Islands (Variant) Dogdo Island (Variant) Dog-do (Variant)					Oceans	Oceans (general)	37° 15' 00" N 131° 52' 00" E	islands



독도는
한국땅이다



한일관계사학회

주소 : (우)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전화 : 031-249-9170 / 010-7176-2548
홈페이지 : <http://www.hanilhis.or.kr>

한일관계사학회